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15
----------	-------

발의연월일 : 2019. 6. 17.

발의자 : 김진표 · 정세균 · 김병기

김해영 · 이찬열 · 안규백

민홍철 · 윤후덕 · 권칠승

백혜련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에 있어 그 대상을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치원은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례적용대상 학교에서 제외되어 있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의 취지에 부응하도록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개발사업을 추가 명시하고, 이에 따라 추가된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교육감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축허가와 달리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그 동안 ‘가구 수’를 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대 수 산정에 대한 분쟁 발생 소지가 크므로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따라서, 현행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현행법의 적용대상 학교에 공립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4조제3항 및 제8조).
- 나.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추가함(안 제2조 제2호너목부터 저목까지 신설).
- 다.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가구 수’를 ‘세대 수’로 변경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5조의2).
- 라.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허가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교육감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추가함(안 제10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초등학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초등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가구”를 “100세대”로 하며, 같은 호에 너목부터 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 전단 중 “300가구”를 “300세대”로, “가구 수”를 각각 “세대 수”로, “가구를”을 “세대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천가구”를 각각 “2천세대”로, “초등학교와”를 “유치원·초등학교와”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중 “가구”를 각각 “세대”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중 “가구별”을 “세대별”로 한다.

제8조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초등학교”로 한다.

제10조 중 “제38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를 “제38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동·서·남해안 및 내륙 권 발전 특별법」 제34조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제2조, 제4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유치원의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된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확보, 경비의 부담,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및 부담금의 부

과·징수는 이 법 시행 이후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사중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거. (생 략)

<신 설>

3. (생 략)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
300가구(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 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

가. ~ 거. (현행과 같음)

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비에 관한 특례법」

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원에 관한 특별법」

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

성에 관한 특별법」

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

법」

어. 「동·서·남해안 및 내륙

권 발전 특별법」

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3. (현행과 같음)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

300세대-----

-----세대 수-----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 ⑤ (생 략)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
의 부담) ① · 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
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가구 규

세대를 세
대 수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
의 부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모 이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가구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가. ~ 마. (생 략)

2. (생 략)

④ ~ ⑧ (생 략)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

-----유치원·초등학교와

-----2천세대-----

가. ~ 마.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

--세대--

<p>하는 경우</p> <p>4. (생 략)</p> <p>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다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u>가구</u>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p> <p>6. (생 략)</p> <p>② ~ ⑥ (생 략)</p> <p>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 한다.</p> <p>1. 공동주택: <u>가구별</u>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p> <p>2. (생 략)</p> <p>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공립 <u>초등학교·중학교</u> 및 고등학교의 시설기준 등 학교용지의</p>	<p>-----</p> <p>4. (현행과 같음)</p> <p>5. -----</p> <p>-----</p> <p>-----</p> <p>-----</p> <p>-----</p> <p><u>세대</u>-----</p> <p>-----</p> <p>6. (현행과 같음)</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1. ----- <u>세대별</u> -----</p> <p>-----</p> <p>2. (현행과 같음)</p> <p>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p> <p>--- <u>유치원·초등학교</u> -----</p> <p>-----</p>
--	---

31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
법」 제50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4조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
별법」 제27조에-----
-----.
-----.